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 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 등 수수료) ①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 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비용징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비용징수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6호(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1997. 2. 24.) 및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1호(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1997. 6. 28)를 폐지한다.

[별표 1]

**수수료 (제2조 관련)**

**1. 계량기 검정**

(단위 : 원)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질 량 계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100kg 이하	210	160	<질량계 공통사항> 저울로서 그 계량방법이 두가지 이상의 형태를 거 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수수료에 다른 형태의 해당수수료의 50%를 가산 한다.
			200kg 이하	280	180	
			500kg 이하	280	180	
			1톤 이하	410	290	
			2톤 이하	660	510	
			5톤 이하	2,310	1,320	
			10톤 이하	3,850	2,530	
			30톤 이하	7,740	5,100	
			50톤 이하	12,100	7,590	
			100톤 이하	18,920	13,200	
			100톤 초과	37,290	25,400	
			전기식 지시저울		20kg 이하	
	200kg 이하	880			520	
	2톤 이하	990			520	
	5톤 이하	3,080			1,210	
	10톤 이하	4,620			2,520	
	30톤 이하	8,250			4,950	
	50톤 이하	14,740			7,700	
	100톤 이하	20,680			12,100	
	접시 지시저울		5kg 이하	25	25	
			10kg 이하	35	25	
			10kg 초과	65	55	
	분동 및 추		500mg 이하	6	6	
			500g 이하	7	6	
10kg 이하			15	15		
20kg 이하			25	15		
100kg 이하			170	55		
500kg 이하			350	120		
500kg 초과			550	230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온도계		체온계		6	6	전자식 체온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부피계	적산식 부피계	가스미터	3m³/h 이하	60	60	
			5m³/h 이하	110	110	
			10m³/h 이하	220	130	
			50m³/h 이하	300	220	
			50m³/h 초과	550	410	
		수도미터 (온수미터포함)	20mm 이하	70	60	1급인 경우 50%를 가산한다.
			50mm 이하	110	100	
100mm 이하	320	210				
100mm 초과	480	350				
연료유미터		2,340	1,730			
오일미터	40mm 이하	620	460			
	40mm 초과	1,210	880			
액화석유 가스미터		2,750	1,800			
전량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20L 이하	110	110	1. 유류로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이상의 게이지클라스 또는 분할눈금이 있는 것은 1개가 증가할 때 마다 50%를 가산한다.		
	50L 이하	170	120			
	1,000L 이하	750	550			
	5,000L 이하	1,960	1,210			
	15,000L 이하	3,740	2,970			
	25,000L 이하 25,000L 초과	6,390 8,030	4,950 6,330			
압력계	혈압계	전자식	130	65		
		아네로이드형 및 액주형	65	65		
열량계	적산 열량계		600	490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전 기 계 기	전 력 량 계	단독계기	40A 이하 100A 이하 100A 초과	80 120 180	1. 단상2선식 기준요금으로 단상2선식 이외의 것은 당해금액의 2배로 한다. 다만, 정밀계기·특별정밀계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발신장치가 부착된 전력량계는 30%를 가산한다.
		변성기부 계 기	보통계기 정밀계기 특정밀계기	290 1,110 2,270	

## 2. 등록 수수료

가.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 등록구분마다 5만원

나.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 등록구분마다 3만원

다. 계량증명업의 등록 : 등록구분마다 3만원

### 3. 계량기의 형식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형식마다 2만원

나. 시험수수료

(단위 : 원)

분 류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계	가.비자동저울		
	1) 판수동저울	103,000	
	2) 전기식지시저울	102,000	
	3) 접시지시저울	109,000	
	나. 분동	19,000	
	다. 추	23,000	
2. 온도계	체온계	263,000	
3. 전기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994,000
		변성기부계기	1,280,000
		전자식계량기	1,600,000
4. 부피계	가. 가스미터	536,000	
	나. 수도미터(온수미터 포함)	662,000	
	다. 연료유미터	228,000	
	라. 액화석유가스미터	228,000	
	마. 오일미터	125,000	
	바. 전량눈새김탱크	50,000	
	사. 눈새김탱크로리	58,000	
5. 압력계	혈압계	250,000	
6. 열량계	적산열량계	1,530,000	
7. 하중계	로드셀	192,000	

주 : 형식인증 변경 등 시험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의 시험·연구 및 기술 지원규칙에 따른다

다. 계량기의 형식인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 2만원

#### 4. 기준기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기 준 기 명	규격 및 등급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기준기 가. 기준분동, 추 나. 기준정량증추	1급	질량이 5kg 이하	600
		질량이 10kg 이하	700
		질량이 20kg 이하	1,000
		질량이 20kg 초과	1,500
	2급	질량이 2kg 이하	400
		질량이 5kg 이하	500
		질량이 20kg 이하	800
		질량이 20kg 초과	1,000
2. 부피기준기 가. 기준탱크 (용량 : 100L 이하) 나. 가스미터	최대용량이 20L 이하	5,100	
	최대용량이 50L 이하	5,300	
	최대용량이 100L 이하	10,700	
	10L 이하	6,100	
	30L 이하	10,700	
	100L 이하	15,300	
	500L 이하	20,100	
	500L 초과	27,600	
3. 전기계기	단상 보통급	15,000	
	단상 정밀급	23,700	
	단상 특별정밀급	39,400	

주 :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에서 기준기검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